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 이정선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「건축물관리법」 시행으로 안전관리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장위10구역 해체공사장 등에서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,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 현장과 그 외 현장의 담당부서가 달라 안전관리대책 적용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「건축물관리법」의 해체허가 대상과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의 해체심의 대상이 불일치해 혼선이 발생해온 부분을 바로 잡아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○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

「서울시 건축 조례」상 해체심의대상을

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,

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

정비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는

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